

자유언론 선언파동

1) 원인(遠因)과 1,2차 운동

1960년대부터 쌓여 온 한국언론의 타성을 바로잡고 참다운 민주언론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1974. 10. 24)이다.

당시 월남, 필리핀 등의 동남아 여러 나라는 정부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되찾으려는 저항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는 우리와 비슷했다. 이해 9월 중순부터 학생, 종교인, 야당 세력의 민주화 운동을 맞게 되었는데, 언론은 여전히 침묵을 강요당했다.

이해 10월, 국내 민주세력의 언론에 대한 각성요구가 거센 가운데 언론은 여전히 학원문제, 월남사태, 연탄사정 등 다급하고 중요한 현실문제에 대해 보도를 억제당해 왔다.

10월 22, 23일에 걸쳐 한국일보 장강재(張康在) 사장과 김경환(金庚煥) 편집국장, 동아일보 송건호(宋建鎬) 편집국장 등 두 신문사의 편집간부들이 월남사태, 학생 데모 보도와 관련, 당국에 소환 또는 연행돼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은 연행사건은 언론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동아일보 기자들은 지체없이 그날로 자유언론선언과 그 실천에 들어갔다. 25일에는 서울과 지방의 거의 모든 언론사로 번져 편집국의 모든 일선 기자들이 자유언론선언을 하게 되었다.

10·24언론선언의 골자는 1971년(제1차)과 1973년(제2차)에 있었던 일선기자들의 자유언론선언과 거의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10·24언론선언은 과거와는 달리 행동과 실천이 적극적이었다. 기자들의 선언문 자체가 지면에 크게 실렸고 보도와 논평이 충실해졌다.

10·24언론선언의 원인(遠因)을 알기 위해 1971년의 자유언론선언을 간추려 옮긴다.

4·19전까지는 언론에 대해 학생이나 사회의 불만이 거의 없었다. 학생과 재야 세력의 언론인 비판은 60년대 후반부터 노골화했다. 이 무렵, 언론계 내부에서도 기자들의 불만이 쌓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71년 초, 기자들은 자유언론수호운동을 벌였다.

3선개헌(1969), 유신헌법(1972) 등을 반대하는 데모가 번졌던 어수선한 사회정세 속에서 언론불신의 구호가 자주 등장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무렵 편집진과 경영진 사이에는 갈등이 생겼다. 「편집은 편집인의 손에서 떠났다」 「오늘의 언론은 연탄가스에 취한 지 오래다」는 등의 말이 언론계에 번졌다.

1971년 4월 15일, 동아일보 기자들은 자유언론수호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언론이 진실의 발견과 공정한 보도라는 본연의 기능을 거세당했다.

△ 신문 및 방송의 제작·판매의 전과정은 언론인의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 이같은 언론의 책임을 전적으로 외부로만 전가하려 하지 않으며, 권리 위에 잠깐 스스로의 게으름도 반성한다.

이러한 일선기자들의 자유언론선언글은 전국 여러 언론사로 번졌다.

한국일보(4·16), 조선일보(4·17), 대한일보(4·17), 중앙일보(4·17), 경향신문

(4·19), 문화방송(4·19), 신아일보(4·19), 현대경제(4·20), 합동통신(4·21), 산업경제(4·23), 동화통신(4·26) 등 12개 언론사 기자들이 선언문을 채택했다.

記協은 언론사 기자들의 이러한 선언문 내용을 집약, 언론자유수호기자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편협은 1971년 4월 20일, 보도자유위원회를 열고 선언의 타당성을 인정, 記協과 보조를 같이 했다. 5월 6일 편협운영위원회에서도 기자들의 선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선언문제는 마침내 편협과 記協의 연석회의로 발전, 5월 8일에는 두 기관 단체의 보도자유위원회가 모여 이 운동의 추진을 위해 수시로 접촉기로 합의했다. 5월 21일, 편협과 記協의 회장단은 정부 당국자를 만나 3개항의 요망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언론자유 신장을 위해 협조를 요청 했다.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언론계의 이러한 심각한 움직임은 이해 하반기에 재연했다. 10월 25일, 정부는 위수령(衛戍令) 발동을 전후해서 언론인들을 연행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편협, 記協 두 단체는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두 가지 문제에 합의했다.

(합의내용)

△ 언론인의 연행·폭행사건이 일어나면 모든 보도기관이 보도할 것을 확인한다.

△ 1968년에 구성 운영할 것을 합의한 바 있는 두 협회의 상설협의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설협의 기구를 구성한다.

편협과 記協은 상설협의체 강화원칙과 함께 위수령 발동 상황에서 있었던 언론인 연행사건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공한을 발송키로 했다. 두 협회는 이해 10월 28일, 전국 언론사 발행인과 편집국장에게 『모든 언론인과 언론기관이 공동운명체라는 연대의식을 더욱 새롭게 하여 사실보도에 충실함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한을 보내 언론의 단합을 촉구했다.

이해 10월 30일, 협의체는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에게 보낸 공한에서 언론인의 수사는 적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 「정부와 언론이 서로 독자적인 기능을 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했다.

편협과 記協의 공동보조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해 10월의 위수령 선포에 이어 12월 7일, 박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해서 편협과 記協의 공동보조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1973년 10, 11월 사이에 또 한 차례 자유언론선언파동이 일어났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매일신문, CBS, MBC 등의 지지들은 사실보도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1971년도에 記協이 채택한 언론자유수호행동강령을 지킬 것을 다짐했다. 각사 기자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편협과 記協도 이를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2) 행동으로 옮긴 운동

1974년의 10·24언론선언은 71년과 73년에 이어 세번째의 자유언론선언 파동이다. 10·24선언 파동은 70년대 한국언론의 사활을 가름하는 심각한 것이었다. 이 파동은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해외에까지 비상한 반향을 일으켜 강력한 국제여론을 이룩하기까지 했다.

이 운동은 야당, 종교계, 학생, 교수, 문인, 외국언론기관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10·24선언 2개월 만인 74년 12월 20일부터 동아일보는 느닷없이 신문광고의 집단적인 해약사태를 맞았다. 광고주를 통한 압력은 동아방송에까지 가해졌다. 이런 압력은 75년에 접어들어 더 심각해졌다.

74년 10월 24일 오전 9시 15분 동아일보기자 180명은 편집국에 모여 자유언론 실천대회를 갖고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하는 한편 이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미증유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선언한다.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자유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기능인 자유언론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교회, 대학 등 언론계 밖에서 언론의 자유 회복이 주장되고 언론인의 각성이 촉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뼈아픈 부끄러움을 느낀다.

본질적으로 자유언론은 바로 우리 언론 종사자들 자신의 실천 과제일뿐 당국에서 허용받거나 국민대중이 찾아다 쥐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언론에 역행하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사회 존립의 기본여건인 자유언론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며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신문·방송·잡지에 대한 어떠한 외부간섭도 우리의 일치된 단결로 강력히 배제한다.

△ 기관원의 출입을 엄격히 거부한다.

△ 언론인의 불법연행을 일체 거부한다. 만약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불법연행이 자행되는 경우 그가 귀사할 때까지 퇴근하지 않기로 한다.

기자들은 선언내용을 신문에 보도할 것을 요구, 경영주측과 의견대립으로 24일자 신문발행이 지연되었다. 이 때문에 25일 새벽에야 겨우 24일자 신문이 사고에 의한 해명이유와 함께 발행되었다. 동아방송의 뉴스방송도 24일 밤, 10시까지 장시간 중단되기도 했다.

이런 속에서 있었던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구선언은 모든 언론인들에게 기폭제가 되었다. 이 사태는 전국으로 확대돼 24, 25일 이틀 동안에 중앙과 지방의 32개 신문 통신 방송의 일선 기자들이 대대적인 언론자유수호선언대회를 열어 △ 사실보도 △ 기관원 등 편집국 출입거부 △ 외부압력의 배제 △ 언론인 연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등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3) 전국 언론사, 결의문 채택

24, 25일에 결의문을 채택한 언론사는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신아일보, 중앙일보, 동양통신, 합동통신, 산업통신, 시사통신, DBS, KBS, MBC, TBC, 내외경제, 국제신보 부산일보, 경기신문, 강원일보, 충청일보, 충남일보, 전북신문, 전남매일신문, 전남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경남일보, 경남매일신문, 전주MBC, 대구MBC, 춘천MBC.

CBS는 한 달 여 앞선 9월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일선 기자들이 임시총회를 열고 언론자유 및 민주수호, 부당한 내외세력간섭 불용납 등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신문 기자들도 다음과 같은 자유언론을 다짐했다.

「우리는 기자다. 기자의 의무는 우리가 제작하는 지면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신문은 우리의 의무와 알 권리를 너무나 외면한 채 우리의 뜻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기자는 이미 기자가 아니며 기자들의 뜻과 의무를 저버린 채 제작되는 신문은 이미 신문이 아니다」.

신민당(新民黨)을 비롯 통일당(統一黨) 그리고 종교계가 잇따라 일선 기자들의 선언과 결의를 지지, 성원하는 가운데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중앙사와 매일신문, 국제신문, 경남일보, 강원일보 등 지방신문 일부에서는 각자별로 일선 기자들로 구성된 자유언론수호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 기사의 누락 △ 제목의 변경 △ 불합리한 단수(방송의 경우는 회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 편집간부들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일부 신문은 기피용어의 타파를 위한

새로운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해 11월 27일, 기협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자유언론수호를 위한 다음과 같은 세부실천사항 28개 항목을 채택, 회원사 분과위원회에 통보했다. △ 전반적인 언론 자유수호를 위한 실천사항 9개항 △ 성실한 취재를 위한 9개항 △ 올바른 편집을 위한 6개항 △ 정당한 신분보장 및 권익옹호를 위한 4개항.

동아일보 기자들은 11월 12일 오전 11시에 거행된 전국 천주교도들의 인권회복 기도회 관계 기사를 사진을 포함, 7면 머릿기사로 신도록 편집국장에게 요구, 쌍방의 견해차이로 기자들이 제작을 거부했다. 이로서 이 날짜 신문이 늦게 나왔고 13일자 7면 중간톱(4단)으로 사진과 함께 실음으로써 타결되었다.

4) 동아일보의 광고 집단해약 사태

10·24언론선언 파동 중 언론계가 겪은 가장 큰 시련은 동아일보의 집단광고해약 사태였다. 자유언론운동 2개월을 며칠 앞둔 74년 12월 20일, 동아일보의 장기계약 광고주인 2개 회사가 「사장의 지시이니 아무 것도 묻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광고계약을 취소했다. 이달 24일에는 10여개 큰 광고주가 한결같이 까닭을 밝히지 않은 채 광고계약을 취소했다. 25일자부터 광고면은 큰 타격을 받았다.

해가 바뀌어 75년 1월 7일, 동아방송에도 광고해약 사태가 밀어 닥쳐 8일 오후 까지 이틀동안 33개 업체의 주요 스폰서가 「말 못할 사정」을 내세워 CM 계약을 취소했다. 동아방송은 군소 광고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광고가 해약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동아일보의 광고 해약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75년 상반기 중 60여개 주요 광고주들이 잇따라 광고를 해약했다.

신문사측은 이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시와 전통을 분명히했다. 기자들은 △ 광고취소 이유가 불분명하고 광고주들이 「더 이상 묻지 말아 달라」고 간청한 점과 한꺼번에 광고가 취소된 점 △ 유독 동아일보에만 해약선풍이 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기

자들은 10·24선언 이후 줄기찬 노력을 기울인 보람으로 국민의 신망이 높아지자 이를 압살하려는 외부의 비열한 책동이라고 규정,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다.

편협과 記協은 75년 2월 국제편집인연맹 국제기자연맹 등에 동아광고 해약사태를 포함한 한국의 언론상황을 통보했다. 신민당은 「언론의 존립마저 말살하려는 이 망국적 처사를 온 국민과 더불어 규탄하며, 의분을 금치 못한다」는 성명을 내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재야 각계에서도 동아일보를 성원하는 한편 범국민적인 「동아일보 돕기운동」을 벌였다.

「돕기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각계 각층이었다. 해외유학생이며 해외교포, 외국인사들까지 「돕기운동」에 참가했다. 성금 격려광고 신문구독신청 등 그 성원은 다양했다.

동아일보 광고면은 거의 격려광고로 채워졌고 동아방송은 CM없는 방송을 계속 해야했다. 집계에 따르면 이 신문의 광고해약사는 58개사, 이 방송에 대한 공고해약사는 52개사, 이로 인해서 신문은 달마다 약 1억원, 방송은 달마다 약 7천만원의 결손을 보게 되었다.

한 야당의원은 이 사태에 대해 「정치적 일인독재, 사회적 유신체제와 함께 경제적으로는 기업의 자유가 정부의 권력에 의해 침해되는 표본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 사태에 대해 1월 4일, 이원경(李源京) 문공부장관은 「신문사와 광고주와의 업무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관계를 깊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이효상(李孝祥) 당의장서리는 1월 1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아마 동아일보가 정부의 비위에 거슬리는 점이 없지 않았나 추측된다」고 전제, 「정부가 여러가지 생각을 다해보고 대처해 보다가 결국 안되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을 택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회의 주목을 끌었고, 이 발언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시비 거리가 되기까지했다.

격려광고에는 익명의 광고가 많았고 발송신문이 중간에서 무더기로 도난당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에서 신문의 구독자를 조사하거나, 구독 호소문을 중단시키는 일도

벌어졌다. 75년 1월 14일과 15일 새벽 사이에 이 신문 김인활(金仁活)광고국장과 이규영(李揆英)광고부장, 이준범(李俊凡)광고집수 담당계원 등 3명이 당국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14일자 4면에 「육군 중위」란 이름으로 실린 격려광고에 대해 의뢰자의 신원과 실린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고 3일만인 17일 밤 풀려났다.

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의 격려광고 총수는 2,943건, 2월에 들어서는 더욱 증가했다. 1월 29일, 국제편집인협회(IPI)는 朴正熙대통령에게 항의전문을 보내왔고, 국제기자연맹(IFJ)도 朴正熙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내왔다.

광고사태로 많은 고통을 겪는 가운데 75년 1월 13일에서 15일까지 3일 동안 중앙과 지방의 기자들은 언론자유수호결의를 다시 확인, 압력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사태는 점점 언론 대 정부, 민주회복 세력 대 집권세력 간의 대립으로 번져갔다. 동아일보 경영진은 결국 정부의 탄압책에 지쳐 사내의 상하간 갈등이라는 미묘한 측면으로 장면이 바뀌어 갔다. 이해 3월 8일, 경영난에 의한 기구축소라는 이유로 기자 18명이 전격 해직당했다.

이 중에는 자유언론운동과 노조지도자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기자들은 해고철회를 요구, 회사측이 어렵다면 봉급을 줄여 받겠다고 제의했으나 외면당했다. 3월 10일에도 2명의 기자가 해고당했다. 기자들은 해고철회를 계속 요구하다가 안되자 3월 12일부터 농성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3월 15일, 송건호(宋建鎬) 편집국장이 사표를 내는 등 사태는 악화되어 갔다.

5) 기자 집단해고와 「투위」 결성

3월 17일 134명의 동아일보, 동아방송 사원들은 소위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동아투위)를 결성 했다.

동아투위는 동아일보사앞에 도열, 애국가와 사가(社歌)를 부르고 회사측이 하루

속히 자유언론의 바른 길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 한편 사회 각계 각층에 동아 투위의 주장을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 일부 기자들도 회사측의 처벌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농성을 하다가 조선일보 자유언론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 3월 10일, 조선투위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조선일보 기자일동은 오늘 언론자유실천을 다시 다짐하면서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 모두 행동을 함께 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조선투위는 37명의 기자들이 해직 또는 무기정직 당한 데 대해 농성을 계속하다가 40여명의 농성기자들이 3월 11일 편집국에서 강제 축출되었다. 동아일보 농성기자들이 축출당한 것은 이보다 며칠 뒤의 일이었다.

6) 민주인권 일지사건

78년 10월 24일, 명동 한일관에서 10·24선언 4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홍종민(동아투위 총무)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고, 이틀 뒤인 10월 26일 안종필(安鍾泌 동아투위 위원장), 안성열(安聖悅 동아투위 위원)이 다시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었다. 10·24민권일지사건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이 사건은 동아투위 10·24선언 4주년 특집 중, 「진정한 민주 민족언론의 좌표」와 보도되지 않은 민주인권사건일지의 내용이 긴급조치 9호에 위배된다는 유신정권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권일지는 1년 동안 유신체제하의 언론에서 전혀 보도되지 않았거나, 보도했더라도 유신정권의 의견을 홍보하거나 체제를 비호하는 등 왜곡 보도한 사건들, 특히 전국 각 대학의 학생운동, 종교계, 노동자 그리고 여러 민권단체의 인권운동 등 모두

250여건을 기사화한 것이다.

1978년 10월 30일 오전 10시, 동아투위는 현역언론인들에게 보내는 글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 반민족적 유신헌법은 철폐되고 △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긴급조치는 해제돼야 하고 △ 학생들과 시민들이 감방에 갇혀 있는 등, 언론이 당연히 보도해야 할 사건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현 유신정권의 언론은 민중이 당연히 알아야 할 진실을 고의로 묵살하고 있음을 통박했다. 또 현직언론인들에게 어둠을 뿌리는 공모자로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권일지사건과 관련, 법원은 동아투위 安鍾泌위원장 등 7명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安鍾泌 :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張潤煥 :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安聖悅 :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朴鍾萬 :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金鍾澈 :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洪鍾敏 :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鄭潤洙 :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